



의료기관 인증 필수교육

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

과정소개

긴급지원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,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학습목표

1.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을 이해할 수 있다.
2.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을 알 수 있다.
3.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.

I.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

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정의

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.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근거하여 운영되며, 위기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적격성을 심사하는 '선(先)지원 후(後)심사'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.

●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

- 선지원 후심사: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고, 이후 적격성을 심사
- 단기 지원: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·단기적 지원이 원칙
- 타 법률 우선: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지원을 우선 적용
- 가구 단위 지원: 원칙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과 그와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

II. 긴급지원 위기상황의 유형

● 위기상황의 범위

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주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.
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

-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위기상황의 판단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III.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방법

● 긴급지원 신고의무자란
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·군·구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의료기관 종사자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.

● 신고의무자의 범위 (의료 관련)
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구조사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
● 신고 방법

- 전화 신고: 129(보건복지콜센터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전화로 신고
- 방문 신고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
- 온라인 신고: 복지포털(www.bokjir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고

● 신고 시 전달할 내용

-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인적사항(이름, 나이, 주소, 연락처 등) —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
- 위기상황의 내용(발견 경위, 대상자의 상태, 위기 유형 등)
- 신고자의 인적사항(비밀이 보장됨)

※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다만, 선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된다.

IV. 긴급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

● 긴급지원 절차

- ① 신고·발견: 신고의무자, 본인, 관계인 등이 위기상황을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발견
- ② 초기 상담: 시·군·구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
- ③ 현장 확인: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직접 확인
- ④ 긴급지원 결정 및 지원 실시: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원을 결정하고 즉시 실시
- ⑤ 사후 조사: 지원 후 적격성을 심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
- ⑥ 연계 지원: 긴급지원 종료 후 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

● 주요 지원 내용

지원 유형	지원 내용
금전 또는 현물 지원	생계지원(식료품비, 의복비 등), 의료지원, 주거지원 등
의료지원	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(일정 한도 내)
주거지원	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
사회복지시설 이용	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지원
교육지원	초·중·고 학생의 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
민간기관·단체 연계	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의 자원과 프로그램 연계

V. 의료기관에서의 실천 사항

● 위기상황 조기 발견

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.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되면 긴급복지지원 신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.

-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
- 보호자 없이 반복적으로 내원하는 아동이나 노인
-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의심되는 환자
-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지원체계가 없는 환자
- 자살 시도나 자해 흔적이 있는 환자

● 기관 내 체계 구축

- 위기상황 발견 시 신고 절차와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체계화한다.
- 정기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높인다.
-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와의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.

참고문헌 및 관련 법령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동법 시행령 (최신 개정본 참조)
- 보건복지부, 「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」 (최신본 참조)
- 보건복지콜센터: 129
- 복지포털(www.bokjiro.go.kr)
- 보건복지부, 「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안내」